

(2) 임용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무를 하게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이 “우”이상이어야 한다.

사) 전직 · 전보의 제한(동규정 제22조)

동규정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거나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경합지구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. 다만, 생활근거지가 경합지역에 속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(전직 등의 제한)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“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
2.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
3.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
4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

아) 비정기전보(동규정 제21조)

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자) 전보의 특례(동규정 제23조)

전보권자는 동일한 시 · 도내의 부부교원, 노부모 · 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차) 전보시기(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(중등) 제6조 제3항)

교육전문직원과 교장, 교감의 전직 또는 전보는 매년 3월 1일, 9월 1일자로 실시하고, 수석교사와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전보 또는 전직할 수 있다.

카) 인사발령통지서 등 (『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』 제18조)

전보, 강임, 면직, 징계, 직위해제, 휴직, 복직, 호봉재획정, 승급, 전출,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, 위촉 또는 해임, 위촉 해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발령통지서[별지 제22호 서식]를 교부하여야 한다.

타) 인사발령 통지(동규칙 제22조)

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부 인사발령 통지[별지 제31호 서식]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파)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(동규칙 제9조)

(1) 교육공무원이 승진, 강임, 전출,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전 임용권자는 그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.